

Resolution 1325 (2000)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213th meeting, on 31 October 2000

결의 1325 호 (2000년)

2000년 10월 31일에 개최된 제 4213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 8월 25 일자 결의 1261호(1999년), 1999년 9월 17 일자 결의 1265호(2000년), 2000년 4월 19 일자 결의 1296호(2000년), 및 2000년 8월 11 일자 결의 1314호(2000년), 및 이사회 의장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여, 또, 2000년 3월 8일의 유엔 여성 인권 및 국제 평화 기념일(안전 보장 이사회/6816)의 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상기하여,

또, 북경 선언과 행동 기반 (총회/52/231)의 결의 및 국제연합총회 제23회 특별 집회 「여성2000년 : 남녀 평등, 21세기의 개발과 평화」 (총회/S-23/10/결의 1) 서류의, 특히 여성과 무장충돌에 관한 개소를 상기하여,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헌장의 아래 국제 평화와 보장의 유지라고 하는 주요 책임을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염두에 두어,

무장 충돌의 악영향을 입는 사람이 일반 시민인 것, 특히 난민이나 국내에서 주거지를 빼앗긴 여성과 아이이며, 더욱 더 무장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에 염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평화와 화해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충돌의 예방과 해결 및 평화 구축에 관련되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보장의 유지촉진에 여성이 대등하게 전면적으로 관련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돌 예방과 해결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여성이 보다 한층 강하게 관여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여,

또, 충돌중 그리고 충돌 후에, 여성과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인도 및 인권법의 전면목표 시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여,

지뢰 구제와 지뢰 인식 프로그램에 여성과 여자 특유의 요망을 관계자 전원이 포함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평화유지 활동의 주류에 남녀 문제를 긴급하게 포함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해, 이 점에 대하여 윈드헤크 선언 및 다각적 평화 지지 활동에 남녀 문제를 주류화하는 나미비아 활동 계획(보장이사회/2000/693)에 주목하여,

평화 유지 종사자에 대해, 충돌 상황하에 있어서의 여성과 자녀의 보호, 특별 고려와 인권에 관한 전문훈련을 추천 하는 2000년 3월 8일의 보장이사회 이사장의 기자회견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장충돌이 여성과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의 이해, 여성과 여자의 보호를 보증하는 효과적인 제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과 여자의 전면적인 참가가 국제 평화와 보장의 유지 촉진에 크게 공헌 할 수 있고 이를 인식해, 무장충돌이 여성과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에 수집하는 필요성에 주목하여,

1. 가맹국에 대해, 국내, 역내, 국제기관 및 제도의 모든 의사결정 레벨에서의 여자 성 대표의 증가를 확보하는 것을 요청한다.
2. 유엔 사무국에 대해, 충돌 해결과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레벨에의 여성의 참가 증가를 실현하는 전략 계획(총회/49/587)의 시행을 추천한다.
3. 유엔 사무국에 대해, 중요 임무를 담당하는 특별 대표나 사절에의 여성 등용의 증가를 요청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가맹국에 대해,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중앙 명부에 기재하는 후보자를 유엔사무국에 제공하도록 호소한다.
4. 한층 더 유엔 사무국에 대하여 유엔의 재야 활동, 특히 군사 감시, 민간 경찰, 인권 인도관계자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과 공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요청한다.

5. 평화유지 활동에 남녀 문제를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 것을 표명하며, 유엔 사무국에 대하여 재야 활동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남녀를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요청한다.

6. 유엔 사무국에 대하여 여성의 보호, 권리, 특유의 요망, 또 평화 유지, 평화 구축의 모든 방면으로 여성이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훈련 가이드 라인과 소재를 가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가맹국에 대해, 군사 및 민간 경찰의 파견 훈련의 일환으로 이것들의 제요소 및 HIV/AIDS 인식 훈련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하며, 게다가 유엔사무국에 대하여 평화유지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에게로의 훈련에도 같은 요소를 요구한다.

7. 가맹국에 대하여 유엔 여성 기금, 국제연합 아동기금,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그 외의 기관 등, 기금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되는 훈련에, 남녀 문제에 관련하는 훈련에의 자발적 재정, 기술, 및 물리적인 원조를 증가하도록 호소한다.

8.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평화 협정을 교섭, 시행하는 것에 즈음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남자 여자 문제에 배려하도록 제창한다.

(a) 귀환, 재정주, 재거주, 재통합 및 충돌 후의 재구축의 기간중의 여성 및 여자의 특별한 요망

(b) 현지의 여성에 의한 평화에의 움직임이나 충돌 해결을 향한 토착고유의 과정과 평화협정의 모든 실행 메카니즘에 여성 관여를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법.

(c) 여성 및 여자의 인권의 보호, 존중, 특히 헌법, 선거 제도, 경찰 및 사법으로 관련 하는 측면.

9. 무장 충돌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특히 민간의 여성 및 여자의 인권 존중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존중을 호소하며, 특히 1949년의 제네바 헌장과 1977년의 추가조항, 1951년의 난민 헌장과 1967년의 관련 사항, 1979년의 여성 차별의 전면 해소와 1999년의 관련 자주 사항, 1989 년의 유엔 아동인 헌장과 2000년 5월 25일의 관련2 항의 아래에서의 의무의

준수를 호소해 국제 범죄 재판소의 로마 규정의 관련 항목의 인식을 호소한다.

10. 무장 충돌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여성 및 여자를 성에 관련하는 폭력, 특히 강간이나 그 외의 성적 학대 및 무장 충돌 상황하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호소한다.

11. 모든 국가에 대하여 대량 학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여성 및 여자에 대한 성에 관련하는 폭력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 대한 면책을 폐지하고, 기소할 책임을 강조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범죄를 특별사면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무장 충돌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난민 캠프나 거주 구역의 민간적 인도적 성질을 존중해, 그 설계를 포함한 여러가지 점으로 여성 및 여자에게 특유의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호소하며, 1998년 11월 19일의 결의 1208 호(1998) 및 2000년 4월 19일의 결의 129호(2000)를 상기한다.

13. 비무장화, 군대해체 및 재통합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남녀 전 투사의 각각의 다른 필요성을 고려하며, 또 그 피부양자의 필요성에 배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14. 국제연합헌장 41조에 따르는 방법이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며, 여성 및 여자에게 특유의 필요성을 고려한 데다가, 적절한 인도적 예외를 숙선해 고려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15.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녀 문제와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현지 및 국제 여성 단체와의 상담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 것을 표명한다.

16. 유엔 사무국에 대하여 여성 및 여자에 대한 무장 투쟁의 영향, 여성의 평화 구축과 관계되는 역할, 평화 과정 및 충돌 해결에 있어서의 남녀 문제와 관계되는 측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한층 더 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하여 유엔 가맹국 모두에 열람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17. 유엔 사무국에 대하여 적절한 곳에 한정해, 평화 유지 임무를 통한 남녀 문제의 주류화와 여성 및 여자에 관한 모든 다른 모든 상황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8. 이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 임하는 것 를 결정한다.